

# 배출시설등 [ ]변경허가 신청서 [ ]변경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35일(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와 영 별표 2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일),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15일
------	------	-----	--

신청형식	[ ] 변경허가	[ ] 변경신고
------	----------	----------

① 신청인	상호(사업장 명칭)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	주소(사업장 소재지)	

② 생산 제품 현황	업종(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5자리 기재)
	생산품명
	주 원료명

③ 입지 등 현황	공장 소재지		
	용도지역	입지제한지역 해당내역	
	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,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[ ] 해당 [ ] 해당없음		
	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환경성조사서 작성 대상 여부 [ ] 해당 [ ] 해당없음		
	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해당여부 [ ] 해당 [ ] 해당없음		
	공사 착공예정일	설치예정 기간(공사예정 기간)	
	규모	사업장 부지 면적(㎡)	제조시설 면적(㎡)

[ ] 수도권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 대상 : 먼지 [ ]톤/년, SOx [ ]톤/년, NOx [ ]톤/년  
 [ ] 중수도 설치대상 [ ] 관리대상기기 관리대상

④ 배출 시설 등	[ ]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, 오염물질발생량: [ ]톤/년	[ ] 폐수배출시설, 폐수배출량: [ ]m <sup>3</sup> /일
	[ ]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	[ ] 비산배출시설
	[ ] 비산먼지 발생사업	[ ] 소음·진동배출시설
	[ ] 비점오염원	[ ] 악취배출시설
	[ ]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	[ ]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
	[ ] 폐기물처리시설	

### ⑤ 배출 오염물질등(배출 항목) 및 방지시설

공정	배출시설등	용량 및 규격 (HP·kW·m <sup>3</sup> )	조업시간	오염물질등 (전체매체)	배출량 (단위)	방지 및 억제시설

⑥ 최적가용기법 적용 여부 [ ] 적용 [ ] 미적용

⑦ 신청(신고) 내용 : [ ]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·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[ ] 배출영향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  
 [ ]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[ ] 사후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
 [ ]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에 관한 사항

⑧ 변경 사항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
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([ ]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, [ ]제6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)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	수수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: 15,000원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# 작성요령

1.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① 대표자의 성명란에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.
2. ② 업종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시 등록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업종명 및 해당되는 업종코드 5자리(세세분류)를 적기 바랍니다.
3. ③ 공장 소재지가 입지제한지역에 해당될 경우 ‘입지제한지역 해당내역’ 란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시고,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 여부, 대기관리구역 해당 여부,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해당 여부,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수도 설치 대상 여부,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」에 따른 관리대상기기 소유 여부에 √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④ 사업장에 설치될 배출시설등의 해당내역에 √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. ⑤ 공정별 배출시설등, 오염물질등, 방지시설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, 상세내역 및 관련 근거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6. ⑥ 최적가용기법 기준서(BREF)의 최적가용기법(BAT) 및 최적가용기법 결론(BAT Conclusion)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상세내용은 허가 신청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7. ⑦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신청내용에 해당하는 내역에 √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8. ⑧ 변경사유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해당 근거조항 및 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.

### 처리절차

